



제427회국회(임시회)
제3차 환경노동위원회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 마련〉

■ 정부제출(의안번호 제4716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 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3
III . 검토의견	2
1.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 마련	2

I. 제안경위

2024년 10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 마련

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결정할 때 ‘정당한 사유’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 27조의2제2항제2호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27조의2(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) ① (생략)	제27조의2(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(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)	2. <u>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</u> -- ----- ----- -----
3. ~ 9. (생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	부 칙
	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	제2조(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

	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-	---

현행법에 따르면 전용용기¹⁾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·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(제25조의2제1항²⁾),

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(제27조의2제2항제2호³⁾).

1) 동법에서 ‘전용용기’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미함.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의2. “의료폐기물 전용용기”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 집·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.

제13조(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) ① (생 략)

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(이하 “전용용기”라 한다)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2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의2(전용용기 제조업) ① 전용용기 제조업(이하 “전용용기 제조업”이라 한다)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,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3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7조의2(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)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

2.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(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)

3.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·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·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

4.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

5.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6.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·규격·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
7.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

8.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9.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·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등록취소 결정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,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유사 입법례로서 동법 제25조4)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참고로, 대법원 판례⁵⁾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·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

4)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허가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시·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

5) 대법원 2004.4.28. 선고, 2002두11752 판결

【판시사항】

[1]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정사유인 '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의미

[2]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'정당한 사유'의 의미

【판결요지】

[1] 구 지방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정사유인 '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'라 함은,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,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.

[2] 구 지방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'정당한 사유'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·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,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는 것이고,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46